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0. 5. 21.(목) 15:0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표철수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창룡 상임위원 (1인)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대행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창룡 위원께서는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대행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다>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2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안건 다>는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0-29-130)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시장조사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향후 자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지행위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료제출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금년 2월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위원회 보고 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규제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장부·서류, 전산 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방법으로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제출요청사유, 제출기한과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안 중 변경사항입니다. 권익위·규개위·법제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청사유를 추가하였고, 자료 제출기한을 15일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를 추가하였고, 자료제출 불가 사유를 ‘부득이한’에서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법제처 사전 조율은 마친 상태이고, 다음 주 목요일 5월 28일에 차관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의결해 주신다면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6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금 법제처 심의를 거쳤습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사전 조율해서 완결된 사항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제가 법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체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15조는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1항은 광고판매업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 제2항이 방송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일,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해서는 안 될 일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세부 유형 및 기준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세부 유형과 기준을 한 단계 넘어서 광고 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대한 장부, 서류,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법체계가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사전 간담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의 구체적 유형을 정해야 할 텐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다, 유사한 내용이 법 제17조제3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에 대한 시행령이라면 이런 시행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15조제3항에 대한 시행령이 과연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식으로 이것은 침해적 행위인데 침해적 행위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자료를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 다 내놓아라, 요청할 수 있다는 식인데, 이것이 법에 있다면 법에서 방통위가 요청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행령으로 이것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법 내용은 행위, 규정, 유형과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자료제출 규정이 저희가 미디어랩법에만 없었던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이든 방송법이든 다른 법에는 동일한 금지행위에 대한 자료제출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디어랩법에만 없어서 이것을 늦게라도 신설하자고 해서 신설한 것이지...

○ **안형환 상임위원**

- 우리의 입장은 저도 이해하는데 법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체계에서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저희는 금지행위 세부 유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것을 한 것 아닙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예.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런데 이 시행령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령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15조제3항은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 시행령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시행령 아닙니까? 이 시행령에 세부 유형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중간에 끼어서 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유인설 방송시장조사과 사무관

- 법 조항이 예년 법 제3항을 보신 것 같습니다.

○ 김재철 방송기반국장직무대리

- 최근에 개정된 법이 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렇습니까?

○ 허 욱 상임위원

- 최신 법령에 보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업데이트된 이 법령으로 다시 한번 보면 제15조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한상혁 위원장

- 자료제출 방법에 대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된 것이라서...

○ 김재철 방송기반국장직무대리

- 이 책자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유인설 방송시장조사과 사무관

- 이것이 작년에 제3항이 신설되었고, 예전 제3항이 제4항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전 제3항으로 현재는 제4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해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더 의견 없으십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이십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지금까지는 미디어법에 금지행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행정조사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에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과 요청 방법 그리고 제출기한 및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자료제출의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막아서 피규제자인 미디어법사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서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의 실효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뒤에 이번에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저는 보고된 안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이것은 권익위, 규제위, 법제처, 이해관계자 의견 다 반영해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유예에 관한 건 (2020-29-131)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유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미디어다양성 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유예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은 ‘OBS 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신청 및 JTBC플러스(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경감 및 유예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OBS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OBS는 2015년~2017년까지 장애인방송 고시 제7조의2제1항제1호, 즉 ‘필수지정사업자로서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 상태 및 자본잠식률 7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편성의무를 경감 받았고, 2018년에는 고시 개정에 따라 5년 중 3년간 적자요건에 해당하여 역시 편성의무를 경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은 고시 제7조의2제1항제4호, 즉 ‘장애인방송시청 보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통위에 경감을 신청하여 편성의무를 경감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방송 고시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로 현재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학계, 유관단체 등 전문가 및 대표자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올해 경감 신청의 경우에도 고시 제7조의2제1항제4호, 즉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신청내용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폐쇄자막은 100%에서 80%, 화면해설은 10%에서 8%, 수어방송은 5%에서 4%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도 지난 4월 서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경감 신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아래 참고표에 제시되어 있지만 지난해 9월 OBS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건을 의결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까지는 OBS도 다른 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장애인방송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해 매년 단계적으로 편성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올해 OBS 장애인방송 편성 경감조치(안)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논의,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OBS의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BS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폐쇄자막은 100%에서 80%, 화면해설은 10%에서 8%, 수어방송은 5%에서 4%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감소, 장애인방송 제작사 선정 시 투명성 제고 등을 경감조건으로 부가하여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JTBC플러스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예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표>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장애인방송 고시 [별표 2]는 유예기준으로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이 100% 이상인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JTBC플러스는 재무제표상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249%로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운영채널인 JTBC2와 JTBC Golf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JTBC플러스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JTBC2의 경우 폐쇄자막에 대해서만 유예신청을 하고, JTBC Golf는 캐스터와 해설자 교육 등을 통해 화면해설방송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도 JTBC플러스의 유예신청은 장애인방송 고시규정에 따른 것으로 편성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JTBC플러스의 장애인방송 편성 유예조치(안)입니다. 장애인방송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예기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JTBC플러스의 올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에 대해 OBS와 JTBC플러스에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OBS와 JTBC플러스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신청서 등 <붙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 고시에 따라 OBS와 JTBC플러스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에 관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OBS는 다른 지역방송사에 비해서 장애인방송 편성부담이 많고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경감을 신청해 왔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경감 받아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적책무를 강조하면서도 OBS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편성의무를 경감하되, 2022년부터는 다른 방송사와 동일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이 되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다만, 고려할 것은 장애인방송 제작금을 지원할 때도 OBS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왔습니다. 즉, 지난 2019년에 OBS의 장애인방송 총제작비 5억 7,100만원 가운데 4억 2,1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 제작비의 74%를 지원했습니다. OBS는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올해도 경감을 받는 만큼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JTBC플러스도 재무제표상 2019년에 결산 자본잠식률이 249%에 달해서 장애인방송 편성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장애인방송 접근고시에 의하면 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이 100%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유예하기로 공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시를 반영해 편성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JTBC 플러스는 편성의무가 유예되더라도 화면해설방송과 수어방송의 편성 비율 준수를 통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JTBC플러스가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장애인방송을 원래의 상태대로 편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부위원장**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JTBC플러스 같이 이렇게 어려운 PP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신청을 해 온 것이 없습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신청을 해 온 업체들은 예를 들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PP들이 MBC플러스도 MBC PP들이 몇 개 있는 곳이고, SBS미디어넷, 여기가 JTBC Golf가 올해 처음으로 지정되었던 것처럼 SBS Golf도 올해 고시의무사업자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JTBC플러스와의 차이점은 JTBC플러스는 우리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잠식률 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거해서 바로 우리에게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사업자들은 그런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OBS처럼 장애인방송시청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방통위에 신청하기 위해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로 경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감의 이유가 대부분 현재 방송 준비사항이 부족하다거나 경영이 어렵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고시 요건에서 규정하는 그런 수칙에 이르지 않으면서 어렵다는 정도였기 때문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4월에 서면회의를 할 때 이런 사업자들까지 우리가 다 경감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면 장애인방송 시청 비율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사정은 있지만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통위 쪽으로는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 **표철수 부위원장**

-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이분들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안건 올라온 것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결과도 있으니 그대로 동의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OBS는 스스로 주장하기는 이미 3년째 흑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기 예정되었던 콘텐츠 투자를 하지 않고 흑자를 낸 것이어서 실재는 흑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사업자 쪽에서는 흑자를 3년째 내고 있다고 주장하니 다음에는 장애인 방송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앞으로도 방송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방송이라는 것이 꼭 형식적인 장애인 편성뿐만 아니라 방송 전반을 통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JTBC, 또는 OBS도 꼭 편성의무가 경감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방송 전반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방송의 의무, 또 이를 방통위는 계속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방송, 또 장애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 심의입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 15시 23분 】

다.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20-29-132) (비공개)

【 15시 30분 】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31분 폐회 】